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 8. 19.

제안자 : 송은섭 의원의

1. 수정이유

부칙 제1조(시행일)중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누락된 관련조례 개정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부칙제1조중 단서 부분을 삭제함.
- 안 부칙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함.
 - ⑩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부분을 삭제함.
 - ⑪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2호중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부분을 삭제함.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으로 한다.

⑪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52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1,462명 2. 내지 4 (생략)</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격으로 정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2,382명</p> <p>1. : 1,315명 2. 내지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직속기관, 사업소</p> <p>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충청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협의안에서 조건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p> <p>(신설)</p> <p>(신설)</p>	<p>(개정안과 같음)</p> <p>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삭제)</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개정안과 같음)</p> <p>⑩충청북도의 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출명출장소, 지방공사, 청구, 청구의료원”을 “지방공사, 청구, 청구의료원”으로 한다.</p> <p>⑪충청북도의 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항의제행정기관”을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p>